

인턴십 운영규정

- 제 정 1998. 8.
- 개 정 1999. 3.
- 개 정 1999. 9.
- 개 정 2004. 6.
- 개 정 2010. 6.
- 개 정 2011. 8.
- 개 정 2012. 6.
- 개 정 2015. 10.
- 개 정 201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국내외의 산업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인턴십 운영(이하 “인턴십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격) 1, 2학년 과정을 마치고 77학점 이상을 취득한 3, 4학년 재학생으로서 학부(과)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턴십과정 대상자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이수학년 및 기간) ①인턴십과정은 3, 4학년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이수 할 수 있다.
 ②인턴십과정은 사전계획에 따라 학기 단위로 이수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학기는 3개월이상(540시간 이상), 여름·겨울학기는 6주 이상(18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수 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로 이수 할 경우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전공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턴십과정 이수가능 학점은 재학기간 중 총 4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학기당 이수가능 학점은 본 규정 제4조의 2항에 의한다.
 (개정2016.02.01.)

제3조의 2 (인턴십과정의 개시 시기) ①인턴십과정의 개시 시기는 신청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2016.02.01.)

1. 인턴십 기간이 1·2학기의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4주일 이내 개시한다.
2. 인턴십 기간이 여름·겨울학기의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개시한다.
3. 인턴십 기간이 방학기간중일 경우에는 종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개시한다.

②위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에 따른 기간 내 인턴십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십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①인턴십과정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한다.

②인턴십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학점은 1·2 학기는 각 최대 18학점까지, 여름·겨울학기는 각 최대 6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방학 중에 실시되는 인턴십과정은 30시간당 1학점

으로 하여 최대 2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졸업최종학기에는 졸업잔여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③이수학기를 연속하여 인턴십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학기의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방학 중에 이수하는 인턴십과정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만큼 추가로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학 중 신청한 등록금은 당해 학년 1학기(여름방학 이수자) 또는 2학기(겨울방학 이수자) 등록금을 18학점으로 나누어 학점당 등록금으로 산정 하며, 장학금지급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인턴십 산업체 선정) 인턴십 당초 목적과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로서 학부(과)장은 그 적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턴십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과)별 인턴십 파견계획 사전수립) ①인턴십과정을 파견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파견개시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파견 준비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6.02.01.)

②학부(과)별 인턴십과정 파견 준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 대상자의 자격 여부 및 인턴십 기간에 관한 사항
2. 파견업체와의 협약 및 인턴십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
3.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인턴십 종료 후 학점인정 및 교과목 명칭 표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턴십 파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인턴십 지원신청서 제출) ①인턴십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학과(부)는 제 5조 ②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인턴십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턴십 파견 및 사전지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인턴십 대상학생이 원만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안내 및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순회지도) ①국내의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의 실태파악 및 산업현장의 적응능력 개선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가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 인턴십 이수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가 인터넷 및 통화매체 등으로 정기적인 지도와 수시상담을 함으로써 순회지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③순회지도를 한 지도교수는 실습학기(인턴십)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인턴십 지도수당) 인턴십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도학생 규모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인턴십 학생의 의무) 인턴십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학부(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턴십 최종보고서와 실습기

- 관의 평가서 등을 소정기간 내에 학부(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인턴십 이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4. 인턴십 과정 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이수인정)

- ① 삭제(2010.6.1)
- ②학기단위(1·2학기는 3개월이상, 여름·겨울학기는 6주 이상)로 이수하는 인턴십과정은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인턴십이수 학기에 해당 학생이 적용받는 학년, 학기에 편성된 교양 및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학기 중에 시간단위로 이수할 경우 소속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인턴십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학년, 학기에 편성, 개설된 교양 및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
- ③인턴십과정 지원자의 학점인정은 학생의 인턴십 최종보고서와 실습기관의 평가서,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평가의견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한다.
- ④소속학과(부)장은 인턴십과정 기간이 종료된 학생에 대하여 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수인정 여부 등을 평가한 인턴십과정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교과명칭 및 성적의 표기) ①인턴십과정을 이수하고 성적을 인정받는 자에 대한 교과명칭 및 성적의 표기는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인턴십과정의 교과명칭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 인턴십과정”등으로 표기하며, 국외인턴십과정인 경우에는 이수국가명이 포함된 “(국가명)○○○ 인턴십과정”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2. 이수인정자의 성적은 P(Pass), 불인정자의 성적은 F(Fail)로 평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Grade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2016.02.01.)

②졸업 마지막 학기의 인턴십과정 평가 결과는 소속학과(부)장이 학교에서 정한 졸업사정 전까지 이수인정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지원) 인턴십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인턴십과정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